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6. 6. 27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발의일자 : 2016년 6월 10일

나. 발 의 자 : 고기판 의원 외 6명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6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(2016. 6. 2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고기판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함.

나. 주요내용

- 자율방범대의 목적, 정의, 명칭 (안 제1조 ~ 제3조)
-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, 임무 (안 제4조, 제5조)
-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, 설립신고 등 (안 제6조, 제7조)
- 자율방범대의 경비지원 등 (안 제8조)
- 자율방범연합대 (안 제9조)
- 자율방범대의 지도 및 감독, 교육, 포상 (안 제10조 ~ 제1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김기영)

-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범죄예방 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‘자율방범대’를 조직·구성하고 필요한 경비 등을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,
- 먼저,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살펴보면,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‘법령의 범위 안’에서 ‘그 사무에 관하여’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,
- ‘그 사무에 관하여’란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사무(단체위임사무)에 관하여를 의미하는바, 「자원봉사활동기본법」 제3조제3호1)에 따라 “자율방범대”는 자원봉사단체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, 「같은 법」 제7조제7호에는 “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”이 자원봉사활동에 포함되고, 이와 같은 자원봉사활동을 「같은 법」 제4조에서는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”가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따라서, 자율방범대에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는 국가사무의 성격과 자치사무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.
- 또한, 자율방범대에 대한 필요경비 등의 지원이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제1항제4호 “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”에 해당되는지가 관건이 됨. 따라서 자율방범대의 성격, 사업의 내용,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,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1)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3. “자원봉사단체”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- 제정안의 조문 체계를 살펴보면, 본문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,
-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, 정의, 명칭 등 조례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자율방범대의 조직, 구성, 임무, 활동범위, 설립신고 등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자율방범대의 경비지원, 자율방범연합대, 지도 및 감독, 교육 및 포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전체적인 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고기관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7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: 2016년 6월 일

발 의 자: 고기관 의원 외 6명

1. 제안이유

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함.

2. 주요내용

- 자율방범대의 목적, 정의, 명칭 (안 제1조 ~ 제3조)
-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, 임무 (안 제4조, 제5조)
-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, 설립신고 등 (안 제6조, 제7조)
- 자율방범대의 경비지원 등 (안 제8조)
- 자율방범연합대 (안 제9조)
- 자율방범대의 지도 및 감독, 교육, 포상 (안 제10조 ~ 제1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
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4조 및 제7조

나. 예산조치 : 「2016 예산편성 운영기준(행정자치부)」에 의거 예산 반영됨.

다. 기타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자율방범대” (이하 “방범대” 라 한다)란 지역에서 방법의식과 봉사 정신이 투철한 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법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.
2. “자율방범연합대” (이하 “연합대” 라 한다)란 영등포구 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에 설립된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.
3. “방법초소”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 (이하 “대원” 이라 한다)들이 집결,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.

제3조(명칭) 방범대의 명칭은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○○○ 자율방범대”로 하고 연합대의 명칭은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연합대” 로 한다.

제4조(조직 및 구성) ① 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·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방범대는 대장·부대장·총무 및 대원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.

제5조(임무) 방법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취약지역 범죄예방·순찰 및 범죄 신고
2. 청소년 선도 활동
3. 교통 및 기초 질서 제도
4.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
5.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이 필요로 하는 사항

제6조(활동범위) 방법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행정동을 관할지역으로 한다.

다만 특별한 경우 인접한 동까지 순찰할 수 있다.

제7조(신고 등) ① 방법대를 설립·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율방법대 설립·등록 신고서(이하 “신고서” 라 한다)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확인·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자율방법대 설립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③ 방법대의 대표자는 방법대가 해산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구 자율방법대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경비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방법대의 원활한 활동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 시 대원수와 전년도 활동실적,

제10조에 따른 지도·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1. 3개월 이상 방법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
2.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
3. 제10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
4. 그 밖에 대원이 파렴치한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 방법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9조(자율방법연합대) ① 방법대의 건전한 발전과 방법대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에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연합대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법연합대 설립·등록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율방법연합대 설립·등록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확인·검토한 후 15일 이내 자율방법연합대 설립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④ 연합대는 합동순찰, 합동 캠페인, 공익사업 등 방법대의 각종 협력 사업을 주관하고, 방법대의 활동을 지원·지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활동 상황을 기재·보관하고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

⑤ 연합대의 조직·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0조(지도 및 감독) ①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

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방법대의 활동에 관하여 연합대에 위임하여 방법일지(별지 제4호서식) 작성 및 활동 실적 등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1조(교육) 구청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법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2조(포상) 구청장은 방법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방법대 및 대원에게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.

제13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) 방법대 운영현황

1. 방법대명(대표자명) :
2. 대 원 수 :
3. 순찰일시/횟수 :
4. 대원현황

(단위 : 명)

구 분	계	자영업	회사원	서비스업	건설업	기타
계						
19~29세						
30~39세						
40~49세						
50~59세						
60세 이상						

5. 장비보유현황

○ 방법초소 설치현황

▷ 위 치 :

구 분	설치연도	설치형태	면 적(m ²)	설 치 재 원	비 고
초 소				(자체설치, 공공건물, 행정기관 지원, 기타)	

○ 장비보유내역

(단위 : 개, 대)

구 분	무전기	가스총	순찰봉	순찰차량		오토바이	기 타
				차 종	대 수		

()방법대 대원 명단

연번	직위	성명	생년월일	주소	연락처		비고
					집	휴대전화	

[별지 제2호 서식]

()동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증 (제7조 관련)			
설 립 자	① 성 명	한 글	② 주민등록번호
		한 자	
	③ 주 소		
신 청 내 용	④ 명 칭		
	⑤ 목 적		
	⑥ 초 소 위 치	(연락처 :)	
	⑦ 총 인 원		
	⑧ 시 설·장 비		
	⑨ 설 립 연 월 일		
<p>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2항에 따라 동 자율방범대 등록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 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</p>			

[별지 제3호 서식]

영등포구 자율방법대 등록대장 (제7조 관련)

등록 번호	방법 대명	초소 위치	대 원 수	시설 · 장비	설립일	대장 인적사항			결 재		
						성명	생년월일	주 소	담 당	팀 장	과 장

[별지 제4호 서식]

조 장	방법대장

()방법대 방법일지 (제10조 관련)

년 월

순찰일시 [날짜(요일), 시간]	순찰 인원	순찰자	순찰내용 (순찰동선, 범죠평방 활동내용 등)	비고
<p>월 일 (요일) : ~ :</p>				